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7 선고 2023가합96886(본소), 2024가합28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이주관, 김영수

변론 종결2024. 11. 1.

판결 선고2024. 12. 27.

주 문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7,534,246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2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23. 3.

28. 체결된 연대보증합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2023. 6. 7.까지는 연복리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 1) 피고와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이하 'C'라 한다)은 2023. 2. 28. 피고가 C에 800,000,000원을 대여하되, 대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자는 연복리 8%로 정하고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일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대여금 채무를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C의 대표이사 겸 주주 D, 주주 E, F, G는 같은 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C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보증한도 1,040,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 3)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대여금

피고는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금 800,000,000원(이하 '본건 대여금')을 C에게 대여하고, C는 피고로부터 본건 대여금을 차용한다.

제2조 변제기

- ① 본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본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기는 피고 및 C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③ 본조에도 불구하고 C가 본 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 또는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되는 경우, C는 즉시 본건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조 이자 및 이자지급일

- ①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복리 8%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제2조에서 정한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4조 지연손해금

C가 본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에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에 정한 변제기로부터 실제 변제를 완료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가 C에 대하여 기한 이익의 상실을 통보한 경우 C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의 청구에 따라 본건 대여금 원리금 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1. 본 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2. C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 이후 가압류, 가처분, 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3. C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 이후 해산, 청산, 회생, 파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해당 절차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6조 담보 제공 등

- ① C는 피고를 위하여 C가 소유한 부동산(용인시 처인구 H, I 토지 및 J외 5필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하며, 채권최고액은 본건 대여금의 130%로 한다.

제7조 연대보증

- ① 각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 1. 채권자: 피고
- 2. 채무자: C
- 3. 피담보채무: 본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원리금 반환채무
- 4. 보증한도: 금 1,040,000,000원

② 각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약벌

C 또는 연대보증인들이 본 계약상 의무(진술 및 보증 의무 포함)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C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건 대여금의 12%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합의서 작성

- 1) 원고는 2023. 3. 28. 피고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C의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같은 날 작성된, 원고가 C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라 한다)에는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3)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 겸 발행회사 C, 발행회사 C의 주주 D, E, F, G는 채권자 겸 근질권자인 피고와 2023. 2. 28.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질권설정자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2023. 3. 28. C 및 피고와 별첨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 주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C의 제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2조 근질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1)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본건 주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질권자를 위한 근질권(이하 '본건 질권')을 설정한다.

가. 피담보채무의 범위

ㄱ.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 부수약정(변제기일 및/또는 상환기일 연기에 따른 추가약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C가 부담하는 대여원리금 지급의무, 손해배상금 채무 기타 C가 피고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나. 담보한도: 채권최고액은 금 1,040,000,000원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이 계약 체결일부터 제8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일까지

(2) 원고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게 될 담보 주식의 전부에 근질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권을 설정한다.

[별지 1] 근질권 설정 주식 목록

C 발행 기명식 보통주 300,000주

주주: 원고

1주의 금액: 금 500원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함.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

제1조 연대보증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1. 채권자: 피고

2. 채무자: C

3. 피담보채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C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원리금 반환채무

4. 보증한도: 금 1,040,000,000원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조 담보 제공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C 발행 보통주식 전부에 대하여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근질권을 설정한다.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5조가 적용된다.

1. 원고가 제2조에 따라 체결한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제3자(C의 주주인 K

포함)가 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진술 및 보증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3. C 또는 원고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 위약벌

C 또는 원고가 본 계약상 의무(진술 및 보증 포함)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C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12%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

1) 수원지방법원은 2023. 4. 12.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 공장용지 4,995m²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3층 공장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L).

2) 피고는 2023. 6. 7. C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5조 제2호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 전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3) C는 2023. 8. 23.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수원회생법원 2023회합 155), 2023. 9. 14.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24. 12. 13.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7, 10, 11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1)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원고가 아닌 피고 회사의 사내변호사 M이고, 원고는 위 합의서에 날인을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연대보증을 할 의사조차 없었는바,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와 대표이사 D이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정을 모른 채 착오하여 위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2024. 10.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를 취소한다.

3) 설령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의 신용정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C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대여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된 것인바,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면제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에 기한 연대보증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원고는 진정한 보증의 의사로 스스로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는 유효하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액 상당의 보증채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제358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쩐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제359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항변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5977(본소), 2019다275984(반소)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피고 및 N는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각 보관하고 있던 위 연대보증합의서의 4면에는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위 각 합의서 1면의 가장자리에는[원고 보관 합의서(갑 제11호증)의 경우 원편, 피고 보관 합의서(을 제1호증)의 경우 오른편] 원고 명의의 인장과 피고의 인장이 계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인영이 원고 본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인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위 진정성립의 추정이 반복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이 유일한바, D은 이 법정에서 "피고 측 M 변호사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장을 건네받고,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 3부를 회의실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후 철인까지 하고 돌아왔다. 원고가 먼저 인장을 찍으려고 하였는데 M 변호사가 인장을 받아 나가서 날인을 하고 돌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D의 증언녹취서 14~15면), 나중에 "M 변호사가 서류와 인장을 회의실 밖으로 들고 나가기는 했으나 M 변호사가 찍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원고가 처음에 기존 서류에 인장을 직접 찍으려고 하였다가 안 찍은 것인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증인 D의 위 증언녹취서 31~32면)."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O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는지 아니면 N의 법인인감 또한 M 변호사가 원고의 인장과 함께 회의실 밖으로 들고 나가서 날인하여 왔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무엇보다 D은 이전에 원고로부터 C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 차례 차용한 이력이 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보유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을 부탁하였던 입장인바 이와 같은 D과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D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이외에 원고 인장의 날인행위가 원고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 9, 11호증, 을 제6, 7, 10,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P의 각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D은 2023. 3. 7. 오전 11시 48분경1), 당시 싱가포르에 있던 원고에게 "안녕하세요, 이사님. 첨부 메일을 확인해 주셔요. 주된 내용은 통화로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하는 내용이며, 27일 오신 후 가급적 빨리 날인하여 피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A씨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피고 측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원해서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위 메일에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 초안 파일[파일명:

'????_???(A님)(EH)_clean(1).docx', '????_????? ??????(A님)(EH)_clean(1).docx']을 첨부하였다. 위 메일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오후 12시 39분경 D에게, "피고에 연대보증을 저만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장님 지분과 제 지분을 합쳐서 50% 이상이어서인가요? 우선, 일정은 27일에 한국에 저녁에 도착을 하여, 당일은 일정이 어렵고요. 사장님과 28일에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 두 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어떠한게 필요한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위 메일을 받을 무렵 두 가지 서류, 즉 피고 측이 원고의 작성을 요구하는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연대보증합의서 초안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피고로부터 위 두 서류의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것을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만 연대보증을 하는 것인지, 위 각 서류 이외에 추가로 작성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를 문의한 것이다.

② 그런데 D은 같은 날 오후 12시 56분경 원고에게 "연대보증은 아니구요, 질권설정입니다. 그리고, K을 제외한 전원이 질권설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은 필요한 경우 하겠다인데, 그건 제가 회장님과 얘기해서 그런 일 없게 할 거구요. 추가로 필요한 것은 인감증명서 2장과 날인할 인감이 필요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D은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원고와 주고받은 위 메일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오후 1시 1분경 피고에게, "혹시 어떤 포맷이 있다면 말씀해 주श्य요."라는 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오후 1시 45분경 D에게 "동의 이메일 관련하여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3월 2일에 M 매니저가 이메일로 안내드린 대로 계약서와 합의서에 동의하며, 국내 귀국 후 계약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에 동의한다는 증빙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D은 오후 2시경 원고에게 "피고 측에서 "계약 내용에 동의하며 입국 후에 날인하겠다"는 이사님 메일이 필요하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쌍따옴표 안의 내용을 추가해서 메일을 함 보내주श्य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오후 2시 48분경 D에게 "계약 내용에 동의하며 입국 후에 날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며, D은 오후 4시 5분경 피고 측에 위 원고의 메일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즉, D은 원고에게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도록 피고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면서도 피고에게는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전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연대보증과 주식근질권설정에 대한 동의 이메일에 어떠한 포맷이 필요한지를 문의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이메일에는 '계약서와 합의서에 동의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음에도 동의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특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만 요청하였던 것인바, 당시 원고로서는 연대보증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D의 말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사가 피고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를 제외한 주식질권설정계약서에 대하여만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메일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③ 그러나 만일 원고가 D을 통하여 전달받은 피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 체결 당일 D에게 자신이 연대보증에서 제외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피고와 작성하기로 한 서류에 연대보증합의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에게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의 회장과 상의하여 연대보증에서 제외하여 주겠다는 D의 말만 믿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하기로 한 담보제공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C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때마다 D에게 직접 요청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D 개인을 연대채무자로 지정하기까지 하였는바, 자신이 채권자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이처럼 철저하였던 원고가 반대로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계약 체결일에 그 여부조차 재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④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던 피고 소속 변호사 M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각 계약서 출력물과 인주를 구비하여 갔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연대보증합의서를 한 장씩 확인한 후 스스로 각 서류 중 자신의 명의 부분에 날인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날인이 끝난 후 본인이 천공을 하기 위하여 서류를 가지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고, 천공을 하고 와서 각 계약서를 원고 및 D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M와 동석하였던 피고 측 직원인 P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연대보증합의서에 직접 날인하는 것을 보았고, 날인이 끝난 다음에 M 변호사가 나가서 천공을 찍어왔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는 D에게, 2023. 6. 7.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2023. 8. 25. 재차 대여금 상환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2024. 2. 6.경 처음으로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주채무 미이행 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D은 2023. 8. 31. M 변호사에게 "원고는 연대보증의 의도가 없었고 연대보증과 상관없는 상황이라 인지하여 계약 체결 당일 질권설정 과정에서 직인을 M에게 맡겼고, 의도와는 다르게 날인을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에서 제외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데, 원고는 2023. 8. 말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에 자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통지에 앞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D은 C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한 원고로부터 상황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에게 '원고는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이메일을 보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에 날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또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52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D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용도에 맞게 이 사건 대여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D이 위 대여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정은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기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여 합의 당시 원고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인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를 착오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를 작성한다는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착오, 즉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9조 제1항이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체납 국세 및 지방세 30,00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미지급 이자 584,297,363원, C 생산 및 스탭조직에 대한 미지급 급여 87,220,480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 87,220,480원(= Q 17,650,480원 + R 18,000,000원 + S 34,570,000원 + T 17,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계약 제5조는 대여금 사용용도 위반을 명시적인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제7호에서 'D 또는 원고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하게 된 것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어 제5조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D이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것과 주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준수할 것'이라는 동기가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라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아울러,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에 원고가 D이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별도로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원고가 그러한 동기를 연대보증합의서 작성 당시 상대방인 피고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시켰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민법 제436조의2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감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은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은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항은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는 보증제도가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제도여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있어 채권자의 정보제공 없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에 관한 일정한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관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이에 관한 통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보증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C의 주식 300,000주를 보유하여 그 지분율이 23.08%에 이르렀던 사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 D과는 중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2.경부터 C에게 수 차례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해 주었을 뿐 아니라(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심지어 '2013년경'부터 C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처 U에게도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C의 신용상태 등에 관한 민법 제436조의2 제1 내지 3항이 정하는 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인 피고가 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채무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C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수원지방법원이 2023. 4. 12.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23. 6. 7. C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5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2023. 6. 7.자 기한이익 상실 통지로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C의 대여원리금에 대한 보증채무금 817,534,246원[= 원금 800,000,000원 + 대여일 2023. 2. 28.부터 2023. 6. 7.까지 발생한 이자 17,534,246원(= $800,000,000\text{원} \times 8\% \times 100/365\text{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피고가 2023. 6. 7.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한 기한이익 상실 통지로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전제로 위 대여원금에 관하여 2023. 6. 8.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인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5조 제2호에서 주채무자인 C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를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연대보증합의 제4조에서는 위 사유를 연대보증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변제기를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어서 채권자인 피고가 보증채무자인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금으로 817,534,246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반소장3) 부분이 원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2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승온

판사이강민

판사임민희

1) 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D에게 해당 메일을 오전 10시 48분에 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싱가포르가 대한민국보다 시차가 1시간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보이며, 위 메일을 보낸 시간은 국내 시간으로 오전 11시 48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제출한 이메일(갑 제8, 9호증)에는 D이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낸 시각이 당시 원고가 위치하던 싱가포르 기준 시각으로, 피고가 제출한 이메일(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D에게 이메일을 보낸 시각이 국내 시각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국내 시간을 기준으로 각 메일 송수신 시각을 표시한다.

2) 대여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산정에 관하여 '연복리 8%'는 '연 8%'의 비율과 동일하다.

3) 피고는 2024. 2. 6.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 및 주채무자 C의 대여원리금 상환채무 불이행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이 사건 반소장보다 이른 2024. 2. 7.자로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위 통지에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